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제2023-10호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대상자는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장

1. 발급기간: 2023. 2. 1. ~ 2024. 1. 31. (12개월간)
2. 공고기간: 2023. 2. 3. ~ 2023. 3. 6.
3. 발급장소: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4. 발급신청 시 지참서류

①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②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이 증명해 준 자격증 등(사진이 부착되어야 함)

③ 본인 신분증이 없을 경우, 17세 이상의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 지참하여 동행

5.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12개월간)내에 발급받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6. 대상자(총 1명)

연번	이 름	생년월일	비 고
1	임*원	2006. 1. 25	폐문부재